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사업영업 분류 코드 세분화 적용에 유의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신청에 KBLI(산업분류코드)를 세분화 하여 적용
- 기존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제품 등록 접수 신청 시에는 일반 가공식품 또는 음료 제품의 포괄적 사업 분야 사항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OSS 시스템의 경우 제품 등록 신청 시 산업 분야별 KBLI(산업분류코드)가 세분화
- 식품 등록 시 기존 KBLI(산업분류코드) 기준 46339(식품 및 음료의 수입 및 유통)으로 포괄적 적용이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해당 분류 별 NIB에 추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식약청에 해당 제품류를 등록 접수를 할 수 있어 유의 필요

KBLI (이전) Thn 2017	식품 분류	KBLI (신규) Thn 2020	식품 유형
46339	모든 식품 카테고리	46334	Minuman Kopi (커피 제품)
		46334	Konsentrat Minuman Rasa/Berperisa Berkarbonat atau Tidak Berkarbonat (Serbuk/ Cair/ Pasta)(기타가공음료)
		46334	Minuman The (차류음료 제품)
		46331	Kembang Gula Lunak/Permen Lunak (캔디류/츄어블 제품)
		46319	Mi Instant (인스턴트 라면)
		46339	Makanan ringan ekstrudat(스낵류 등)

* 일부 예시 자료로 46339 가공식품류에서 세분화 적용 KBLI 코드 소개

* 제품유형별 KBLI 적용 확인은 식약청(BPOM)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신규 분류 코드에서 46339(Perdagangan Besar Makanan dan Minuman Lainnya : 수입유통 분야 식품 및 음료)가 있지만 수산가공식품의 경우는 46324, 닭고기 포함 가공식품의 경우 46322, 커피, 차류 가공식품의 경우 46314, 라면류 제품 46319와 같이 세부 분류에 대한 영업허가 분야가 추가 되어 있어야 접수 신청이 가능
- 제품의 유형별 적용 KBLI(산업분류코드) 사항은 아래 식품의약품(BPOM) 사이트에서 조회 확인 할 수 있음
=> <https://ereg-rba.pom.go.id/front/jpimportir>

* 출처 : 식품의약품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전 검사 제도 소개

1) 선적전 검사 대상 제품 사례 소개

- 인도네시아 세관의 수입 통관 준비에 있어 선적전 사전검사(LS) 대상 제품은 필히 수출국에서 상품의 상차 이전 선적전 사전검사를 수행한 후 상품이 수출국 항만에서 출항 되어야만 인도네시아 세관에 통관 절차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함. 선적전 검사 미이행 시 수입 통관 불가
- 선적전 사전 검사 대상은 무역부 규정 2021년 20호에 개정안을 추가하여 시행되고 있음. HS Code에 따른 인니 통관 요구 사항에 해당 사항의 적용 대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신청의 주체는 인도네시아 측의 수입사가 인도네시아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한국의 위임 감사기관인 한국 SGS 또는 TUV에서 수행하고 있음

- 다음은 일부 선적전 사전 검사 대상 유형 소개를 참고하여 HS code 별 대상 유무의 확인은 인도네시아 국세청 <https://www.insw.go.id/intr> 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음

No	HS code	상품 설명
1	2106.90.53	인삼을 원료로 가공한 음료 제품
2	2202.99.20	두유 음료
3	2202.99.50	커피 기반 음료 및 커피맛 음료 제품
4	2104.10.19	수프 및 육수 기반 기타 가공제품
5	2103.20.00	토마토 썬칩 및 기타 토마토 소스류
6	2103.90.12	생선 소스(젓갈류 등)
7	2103.90.11	고추 소스(고추장 등)
8	2101.11.19	커피, 차 또는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 제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들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9	2007.99.20	과일 잼 및 젤리
10	1902.19.40	파스타(요리하였는지, 속을 채웠는지(고기 또는 기타 재료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쿠스쿠스(준비 여부 불문)

2) 선적전 검사 기관 및 신청 방법

- 인도네시아의 선적전 검사 기관
 - PT. Sucofindo Indonesia (Suveyor Invonesia와 업무 통합)
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https://app-vpti.com/imp/>
 - PT.Anindaya Wiraputra Konsult (2019년 LS 검가기관 민영사업자 지정)
접수 신청 방법 : +62.21.2260.6207 / e-mail : cs_lsi@anindaya.biz

- 신청 서류 일반 : NIB(영업허가증), NPWP(납세자등록증) 등
 - Invoice, Packing List 및 기타 허가 서류 및 수입 승인(해당 시) 등의 수입 서류 필요
- 업무 처리 절차는 수입사는 수출국 선적 예정일 최소 14일 이전에 선적전 사전검사 기관에 신청하여 요구 서류와 양식에 맞추어 신청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 후 한국의 위임검사기관에 통보, 이후 위임 기관에서는 해당 수출 업체에 연락 하여 선적전 사전검사를 현장에서 수행하게 됨

2.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예고에 따른 돼지고기 함유 표시 관련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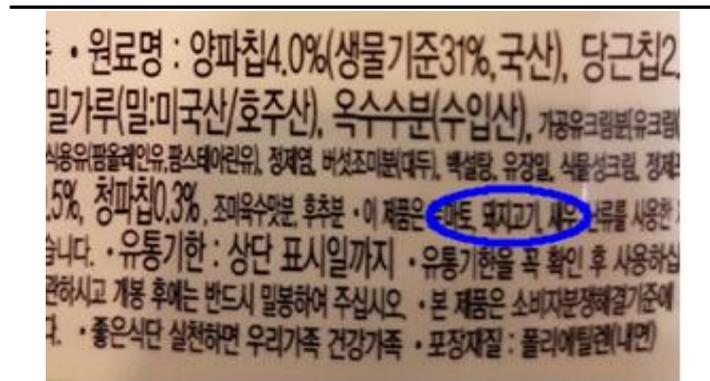
-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할랄 식품 표시 방법이 발표되지 않아 기존의 비할랄식품 표기에 대한 주의 필요
-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시 관련 규정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 (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시/라벨이 의무임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함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ENGANDUNG BABI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ENGANDUNG BABI </div>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표기로 인한 문제
 -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한글 문구로 인한 문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르면 **돼지고기**, 난류, 우유 등 21가지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와는 별개의 사안임



▲ 돼지고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등록된 한국 수입식품들 중 다수에 위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소비자들에 의해 문제 제기 가능성 상존
- 가공식품 라벨링에 대한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7년 27호의 개정안 2018년 31호 발표
- 가공식품 제조 과정 중에 돼지 파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설비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촉한 경우 빨간 글씨와 테이블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



▲ 해석 :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함께 제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거나 접촉하였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해당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